

평택시 지역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5. 20.]

1. 건설위치 평택고덕A-3블록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2로 190 (166호)
 평택고덕A-7블록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202 (295호)
 평택고덕 A57-2블록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70 (129호)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자세한 **입주자 선정순서는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입주자격완화 내용		
1순위 (일반입주자격)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일반조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일반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2순위 (완화입주자격)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완화조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완화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3순위 (완화입주자격)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완화조건
	전체		150% 이하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 계약을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공급주택은 최초 입주 후 미입주 또는 해약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현재 공사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5.20(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평택고덕 A-3블록, A-7블록,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1)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만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완화조건】 만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2)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완화조건】 만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약자형 주택은 위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다음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주거약자”란?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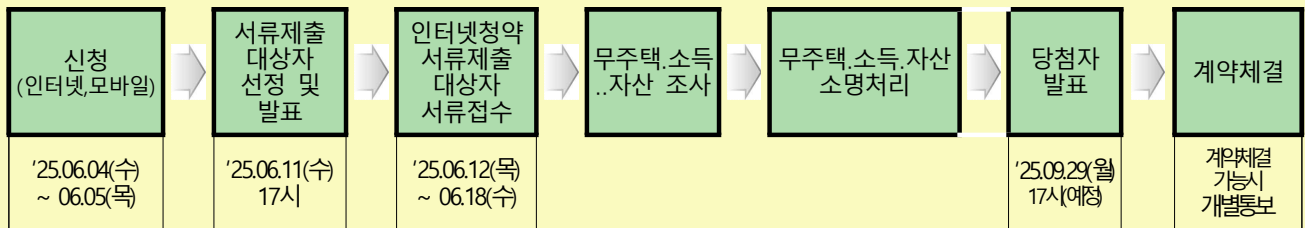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됨

-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3블록, A-7블록,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평택고덕 A-3블록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330세대), **행복주택(166세대)**
 - 평택고덕 A-7블록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596세대), **행복주택(295세대)**
 -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256세대), **행복주택(129세대)**
- **공급대상(계층) 및 순위(입주자격완화 순위 및 일반공급 순위)에 적격하지 않을 경우, 단지별·공급형별 모집하지 않는 공급대상(계층)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대상 선정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오니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 가능하며,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기타 추가 제출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5. 신청서류 참조)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 형별	공급 대상	공가	잔여 예비 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250)	세대 당 계약면적(m ²)				합계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평택 고덕 A-3	55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6	0	60	55.7200	21.8592	9.0157	41.7269	128.3218	10~14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지역 난방
	55A1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1	0	5	55.7200	21.8592	9.0157	41.7269	128.3218	10~14	
평택 고덕 A-7	4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	0	20	46.9700	20.4478	5.4374	36.6533	109.5085	10~14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지역 난방
	46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	0	20	46.9900	20.4565	5.4398	36.6689	109.5552	10~14	
	46A-1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12	0	20	46.9700	20.4478	5.4374	36.6533	109.5085	10~14	
	55A1/ 55A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	0	70	55.9700 55.9900	24.3659 24.3746	6.4793 6.4817	43.6765 43.6921	130.4917 130.5384	10~14	
	55A1-1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0	0	5	55.9700	24.3659	6.4793	43.6765	130.4917	10~14	
평택 고덕 A57-2	55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	0	20	55.9700	22.5575	8.8209	39.2509	126.5993	10~14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지역 난방
	55ALS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8	0	20	55.9500	22.5495	8.8177	39.2369	126.5541	10~14	
	55BS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3	0	10	55.9700	22.5575	8.8209	39.2509	126.5993	10~14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공가호수”는 공고일현재 공실수이며 보수중인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고덕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166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330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평택고덕 A-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295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59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129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25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A-3블록, A-7블록,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입니다.
- **(평택고덕A-3)** 55A형 1세대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별도 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평택고덕A-3)** 전 세대(166호) 발코니 확장형으로, 가스쿡탑(3구형)이 설치되며, 작은방-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시공,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공급 됩니다.
- **(평택고덕A-3)** 55A1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아래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평택고덕A-7)** 55A1/55A4형 2세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용으로 공급됩니다.
- **(평택고덕A-7)** 전 세대(295호) 발코니 확장형으로, 팬트리-드레스룸/작은방-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시공되며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평택고덕A-7)** 46A-1형, 55A1-1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아래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평택고덕A57-2)** 55AH형 1세대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급호수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택고덕A57-2)** 전 세대(129호) 발코니 확장형으로, 가스쿡탑(3구형), 현관팬트리,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되며 침실2·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시공됩니다.
- **(평택고덕A57-2)** 5ALS형, 55B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공고문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단지명	공급 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평택 고덕 A-3	55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8,000,000	4,900,000	93,100,000	460,600	(+) 47,000,000	145,000,000	186,430
							(-) 81,000,000	17,000,000	696,850
	55A1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98,000,000	4,900,000	93,100,001	460,600	(+) 47,000,000	145,000,000	186,430
							(-) 81,000,000	17,000,000	696,850
평택 고덕 A-7	4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74,400,000	3,720,000	70,680,000	349,680	(+) 35,000,000	109,400,000	145,510
							(-) 61,000,000	13,400,000	527,590
	46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74,400,000	3,720,000	70,680,000	349,680	(+) 35,000,000	109,400,000	145,510
							(-) 61,000,000	13,400,000	527,590
	46A-1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74,400,000	3,720,000	70,680,000	349,680	(+) 35,000,000	109,400,000	145,510
							(-) 61,000,000	13,400,000	527,590
	55A1/55 A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7,600,000	4,380,000	83,220,000	411,720	(+) 42,000,000	129,600,000	166,720
							(-) 72,000,000	15,600,000	621,720
	55A1-1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87,600,000	4,380,000	83,220,000	411,720	(+) 42,000,000	129,600,000	166,720
							(-) 72,000,000	15,600,000	621,720
평택 고덕 A57-2	55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7,600,000	3,380,000	64,220,000	298,560	(+) 30,000,000	97,600,000	123,560
							(-) 56,000,000	11,600,000	461,890

단지명	공급 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55ALS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67,600,000	3,380,000	64,220,000	298,560	(+) 30,000,000	97,600,000	123,560
							(-) 56,000,000	11,600,000	461,890
	55BS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67,600,000	3,380,000	64,220,000	298,560	(+) 30,000,000	97,600,000	123,560
							(-) 56,000,000	11,600,000	461,890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0.)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가능시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	---------------------------------------	-------------------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맞벌이 신혼부부	2인	7,120,104원 이하	130%	7,667,804원 이하	140%	8,215,505원 이하	150%
	3인	9,152,368원 이하	120%	9,915,065원 이하	13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10,293,706원 이하	120%	11,151,514원 이하	13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10,837,258원 이하	120%	11,740,362원 이하	13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11,679,703원 이하	120%	12,653,012원 이하	130%	14,599,629원 이하	150%

* 7인 이상의 가구 소득한도액은 6인가구 소득금액 기준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구 분	가구원수 1인당 추가금액		
	1순위(일반)	2순위(완화)	3순위(완화)
일 반	+702,038원	+842,446원	+1,053,057원
맞벌이부부	+842,446원	+912,649원	+1,053,057원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시 1세대 1주택 신청원칙에 따라 중복신청이므로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맞벌이로 신청할 경우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20.)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에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및 완화된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아래 '부양가족의 범위' 참고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평택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동일 순위 및 배점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5.06.04(수) 10:00 ~'25.06.05(목) 17: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현장접수 > '25.06.04(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 LH평택안성권 주거복지지사 (고령자등 정보취약계층)	'25.06.11(수) 17: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25.06.12(목)~6.18(수) ※ 등기우편 발송장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 2025.06.18(수)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함	'25.09.29(월) 17:00 이후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ARS(1661-7700)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개별통보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5.06.12(목) ~ 6.18(수)]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됩니다.**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ARS(1661-7700)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및 현장 청약대행접수 청약자에 한하며,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와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누락, 착오신청, 허위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해당순위,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 중 평택시 계속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공고일(2025.05.20.) 기준 평택시에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거주 시작일에 주민등록표초본 상 평택시 거주시작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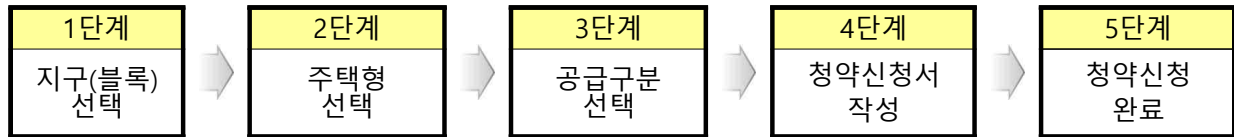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6.04.(수) 10:00시부터 '25.06.05.(목)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5.06.04.(수) 10:00시부터 '25.06.05.(목)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접수기간 : **2025.06.04(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방문 신청장소 :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현장 청약대행 접수는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와 공급대상자별 추가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신청서류 참조)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5.06.11(수)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25.06.12(목)~6.18(수)]에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인 **2025.06.18(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등기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앞 (우편번호 17783, 봉투 겉면에 "신청단지, 주택형, 이름, 접수번호" 반드시 기재)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5.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기재)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현장방문 신청자는 접수시점에 제출	1통 (별첨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기재)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첨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별첨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첨3)
확약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약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첨5)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필수]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 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행정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행정복지 센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 혼 부 부 및 예 비 신 혼 부 부 한 부 모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맞벌이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맞벌이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행정복지센터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가족 계 층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사본 ※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미제출시 입주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 (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2.7.10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0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 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 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 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당첨결과조회))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서면등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기재 후 송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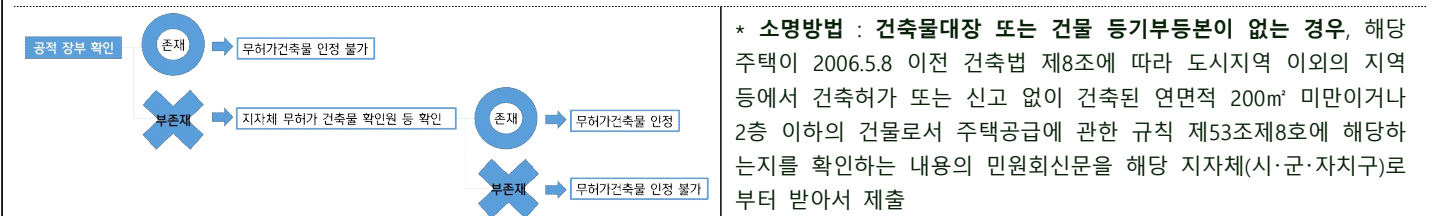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와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자 산	동 산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 동 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 융 자 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 타 자 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 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 동 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총 자산	일반 자산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 지방세정 자료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단,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는 완화조건에 따라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5년의 경우 3,80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 고덕 A-3 지구 및 단지 특성	■ 지구 여건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9호, 2023.1.11.)로 승인된 “고덕국제화계획 지구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발단계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이 지구 내 입지하고 있으며, 통합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 협의 중에 있으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입주 시 군사시설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군사시설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 이전 예정이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공동주택 입주 시 보일 수 있으며, 군사시설 이전 전까지 일부 도시계획도로 이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 시 지구 내 학교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학교(유치원 포함)설립 시기는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개교일정 등은 사전에 교육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주민센터, 경찰파출소, 소방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평택시청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경사로 및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북측에 군사시설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동측 경계부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있어 철도시설이 보이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평택시 등 관계기관의 하천정비계획 변경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에 따라 지구 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악취 및 수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수질복원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남서측 유보지 등에 철탑이 존치되어 있으며, 지중화 과정에서 유보지 구간에 임시철탑(C/H)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며, 추후 모든 철탑(C/H 포함)은 지중화 공사 완료시 철거될 예정입니다.
- 당해지구 남서측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중화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도로이용제한 및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합레저·유통단지 등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 진행지구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 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인접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서정리 역세권 등)은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과 연접하여 남측에는 업무 및 상업용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동측으로 육교가 연접하여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가 연접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인접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항공기, 고가도로 및 서정리역 주변 전철 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 A-62블록(행복주택) 및 A-1블록(공공임대), 서측에 A-5블록, 동측에 A-2블록(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남서측에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 등이 존치되어 해당부지 입주 후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가 보일 수 있으며, 송전선로 지중화 전까지 임시철탑 등이 존치 예정입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지역난방공사에서 임시시설을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으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공사 완료까지 임시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특화계획인 국제교류단지 및 에듀타운 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등 단지 내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위탁운영 등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동측에는 단독주택용지, 서, 남측에는 공동주택용지, 북측에는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 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 발생시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활타리 담장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인근 주민의 출입과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공사여건에 따라 공사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m, 주차장 구간은 2.1m 입니다. 다만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 할 경우 차로의 높이는 2.7m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운동시설에 운동기구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본 단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2의 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5~20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341동 1호, 342동 1호, 344동 2호, 346동 2호, 348동 3호, 349동 1,2,3호는 1,2층 필로티로 시공되고, 345동 1,2,3,4호 1층 필로티로 시공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전조등의 영향 및 램프지붕의 빛 반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상업용지, 업무용지와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에 설치된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지상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E/V 승강로 및 기계실과 인접되어 있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일부 지하1개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서측 주출입구에 위치합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팜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철제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화재 시 직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창고시설로 사용이 부적합 하오니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세대에는 실외기실에 관련법규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가 설치된 직하층에는 피난상황 발생 시 피난사다리 전개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벽체의 문양과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뒷면 및 주방가구 뒷면 벽체 타일은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구 하부와 후면벽체, 천장에는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설계여건상 현관창고는 55A형에, 추가신발장은 55B형에 설치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600대(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주차 2대)이며, 총 600대 중 24대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349동 인접 근린생활시설(상가) 주변 지상주차장은 2대로 설계되어 있으며,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 별도 구분·구획이 없고 차량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뿔칠로 시공됩니다.
-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실내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용역원 휴게소, 관리사무소, 경비실, 계절창고, 실내놀이 터, 카페 등이 있으며,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는 가동 시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매립배관이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에 설치되며, 실외기 구매 및 설치에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거실, 침실1 제외)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사항 및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어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선풍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342동, 343동 사이 지하층에 펌프실 및 열교환기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상부에 냉·난방 실외기가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용시 인근동에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 빨래건조대 사용시 주변 시설물과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등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347동 옥상에 안테나(UHD,DMB,FM,OBS) 및 무궁화위성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층 환룸#2, 환룸#11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 장치가 설치되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현장여건 및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최상층의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
-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세대 내 단말기(월패드 LCD10")는 방문자 확인, 현관문 열림, 홈 제어(가스차단, 난방제어, 방범기능, 조명제어, 택배 및 차량 도착알림), 스마트폰 연동기능 제공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빨래건조대(조인트박스 적용) 및 환기시설의 전원

및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및 설치될 예정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343동, 345동, 347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모듈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모듈의 사양에 따라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전 특고압 PAD/SW 설치로 인접 일부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는 지하주차장 램프 인근에 급속 충전기 1개, 완속 충전기 1개(2채널용)가 설치되며, 이동식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344동, 346동은 지하1층 주차장에서 동 출입이 불가하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지하1층 주차장 높이 H=2.7M로 계획되어 택배 차량은 지하1층으로만 진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344동, 346동은 택배 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 스마트 우편함은 각 동 지상 1층에 설치되며, 무인택배함은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 여건 상 344동, 346동은 지상 1층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음)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층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무선랜(AP)의 초기 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변경이 가능하고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학교관련 사항

- 지구내 초·중·고 총 2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 시 지구 내 학교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종덕초로 임시 배치될 예정이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매해 인근 학교 배치 여력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사전의견 수렴 후 통학구역조정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하반기에 행정예고를 통해 확정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교 신입생은 컴퓨터 전산 추첨방식으로 배정되며, 중학군(구) 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배정 일정 및 방법 등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개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계획된 학교(유치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신설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용지가 설립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사항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주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리모델링 등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공급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건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며, 팸플릿을 참고하여 청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고덕 A-7	지구 및 단지 특성	■ 일반사항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임대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여건 •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99호, 2019.08.06)로 승인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지구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9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동일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육군 2개 부대가 지구 내 입지하고 있으며, 통합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 협의 중에 있으며, 이전시기 미정으로 입주 시 군부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탄약고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 이전 예정이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공동주택 입주 시 탄약고가 보일 수 있으며, 탄약고 이전 전까지 일부 도시계획도로 이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 시 지구 내 학교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행정복지센터, 경찰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평택시청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북측에 오산비행장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동측 경계부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있어 철도시설이 보이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입주 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구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에 따라 지구 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악취 및 수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수질복원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 기존 장당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지구 남측에 계획된 신설 하수처리시설(고덕처리장)과 기존 하수처리시설(장당처리장)을 통합 설치할 예정으로, 통합처리 및 이전시기 등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입주 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존치하며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 공간(연결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 발생 시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과 연결하여 동, 서, 남측에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북측은 공동주택지필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에는 어린이공원 위치할 예정으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과 서측에 연결녹지가 연결해 있으며, 단지 북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가 연결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인접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A-6블록 행복주택, 남측에 A-8블록('19.06월 경 입주), A-9블록('19.08월 경 입주)이 위치하며, 남서측에 A-17블록('19.11월 경 입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이 위치해 있으며, 역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1km 거리에 있고, 남측 및 동서측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 입주 시 공동주택 인근의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부족, 공사차량 통행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지역난방공사에서 임시시설을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으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공사 완료까지 임시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같은 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 등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동측에는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서, 남, 북측에는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인접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활타리 담장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학교 가는 길 및 부대시설은 인근 주민의 출입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공사여건에 따라 공사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방과후돌봄, 경로당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생활건강센터,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경로당, 주민카페, 방과후 돌봄, 작은도서관, 새싹스테이션, 관리사무소, 경비실, 택배보관소 등이 있으며,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경로당, 보육시설에는 주방가구와 신발장 설치)
- 임대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m,

주차장 구간은 2.1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차량 등이 모든동에 접근 가능한 1개층(지하2층)의 차로 높이는 2.7m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혼합단지로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분양, 임대)별 구분 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시설은 단지 외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주민회의실 등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290동의 그로잉센터 인근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通行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8~25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재연설비의 재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1, 2층 필로티(281동 2, 3호, 284동 3호, 286동 3호, 289동 3호)로 시공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DECK층 및 지상 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상업지역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 창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비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E/V 승강로 및 기계실과 인접되어 있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3개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동측 주출입구 위치합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체결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시공되며,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외부창호 형태 및 발코니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는 타입별로 발코니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사양에 따라 발코니 또는 침실 창문을 통해서 반입하여야 합니다.
 - 욕실장 뒷면의 벽체 타일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하부와 후면벽체에는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발코니2의 보조수납가구는 일부 주택타입(55A1, 55A3, 55A4)에만 설치됩니다.
 - 주방 아일랜드식탁은 이동 가능한 구조로 바닥마감 시공 후 설치되며, 일부 주택타입(46A)은 별도의 아일랜드식탁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1,072대(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주차 2대)이며, 총 1072대 중 33대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291동 인접 근린생활시설(상가) 주변 지상주차장은 2대로 설계되어 있으며,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 별도 구분·구획이 없고 차량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 마감은 무기질계 뿔칠로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는 가동 시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됩니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정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정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선반은 각 형별에 따라 폭이 상이할 수 있고, 높이조절·접힘·걸침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며 과도한 중량물 사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전기실, 저수조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기계실(열교환실) 설치위치:1개소(281동 인근), 펌프실 설치위치 : 1개소(283동, 284동 인근)]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실내 환기는 1종 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였으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어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유니트는 발코니(세탁실) 천장에 시공되어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시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선홍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86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81동, 283동, 284동, 285동, 286동, 287동 옥상에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
 - 홈 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방문자 확인, 현관문 열림, 홈 제어 (가스차단, 난방제어, 방범기능, 조명제어, 택배 및 차량 도착알림), 스마트폰 연동기능이 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습니다.
 - 택배보관함은 각 동의 아닌, 일부 동 인근에 그룹별로 통합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전기분전반은 신발장 또는 거실통로 부위에 매입설치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전 특고압 PAD/SW 설치로 인접 일부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학교관련사항

- 지구내 초·중·고 총 2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 시 지구 내 학교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종덕초로 배치될 예정이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생은 송탄중학군(라온중, 송탄중, 은혜중, 이충중, 장당중, 태광중, 효명중)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택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등학생은 개발지구 인근 학교(효명고, 이충고, 태광고, 라온고, 송탄고, 은혜고)로 배치될 예정이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학구역·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학교 현황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고덕 A57- 2	지구 및 단지 특성	■ 지구 여건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74호, 2023.08.21.)로 승인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지정(12차) 개발계획변경(15차) 및 실시계획변경(13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육군 2개 부대가 지구내 입지하고 있으며, 통합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 협의중에 있으며, 이전시기 미정으로 입주시 군부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지구내 탄약고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 이전 예정이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시 탄약고가 보일 수 있으며, 탄약고 이전 전까지 일부 도시계획도로 이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경사로 및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북측에 오산비행장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동측 경계부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있어 철도시설이 보이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서측 남북방향으로 경부고속철도(KTX) (이격거리 : 1.2Km이내), 평택제천 고속국도(이격거리 : 1.3Km이내) 등 지역에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에서 직선거리 1.6km 이내에 평택고덕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북동측, 북측으로 함박산, 바람산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남동측으로 서정리천, 진위천이 위치하고 있고, 지구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입주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에 따라 지구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악취가 나거나 수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기존 장당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지구 남측에 계획된 신설 하수처리시설(고덕처리장)과 기존 하수처리시설(장당처리장)을 통합 설치할 예정으로, 통합처리 및 이전시기 등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입주시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측면에는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 생활불편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 지구 남서측 유보지 내에 철탑이 존치되어 있으며, 추후 지중화 공사를 통해 철거될 예정임에 따라 지중화공사 구간 도로이용은 제한됩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수질복원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현장에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예정), 중학교(예정), 특목고(예정)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시 지구내 학교개교가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주민센터, 경찰파출소, 소방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평택시청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남측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송전선로 지중화 전까지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 등은 존치 예정이므로 해당부지 입주 후 북·서·남측으로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가 보입니다.
- 본 단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인접한 조성공사, 조경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서측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연결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공원·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조경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KTX 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에 A-56블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남동측에 A-57-1블록(행복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 유보지1이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세부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서측 특교1, 2는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단지 주변 특화계획인 국제교류단지 계획, 에듀타운 등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서측에는 국제학교, 특목고, 중학교,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고, 북동측에는 근린상가용지, 북서측에는 공동주택(A56BL) 및 남동측에는 공동주택(A57-1BL)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으로 주출입구와 연결하여 주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 근린생활용지(예정)의 상업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불빛, 악취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임대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 인접대지는 초, 중, 고등학교 등 계획부지로 향후 학교 설립시(미확정) 저층세대의 소음, 일조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아파트 단지는 공공분양주택과 행복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2의 1항에 따라 500세대 미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경우 평택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심의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 일부에 위치하며, 원아모집 및 운영 관련사항은 추후 관계법령 및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1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이며 택배차량은 지하1층으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 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지하에 469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2대이며, 469대 중 18대는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주차장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함)으로 설계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필로티, 지상1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휴게공간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창호 외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55B타입 세대 제외)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주민카페, 방과후쉼터, 작은도서관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 동 번호, BI(Brand Identity)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설설치 여부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로부터의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는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 주변 지상주차장(2대)은 차량 진출입 차단기 통과 후 출입이 가능하나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 및 상가 입주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가까이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배출량 및 처리비용을 관리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 동별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필로티,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지침 등)에 따라 울타리 및 담장,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등의 조경 식재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 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 공기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기가 지하주차장 환풍4(지하2

층 및 지하1층에 각각 1개소씩)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우편함은 통합형(무인택배함 포함)으로 각 동 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층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상층 및 주위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출입구 주차차단기 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환기설비 및 제습기가 설치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화장실,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경량벽체는 칸막이 구조로, 인접한 거실 또는 침실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는 봉투바름(테두리바름)으로 시공되어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몰딩 등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가구류(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실외기실은 철제 여단이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에는 실외기실에 관련법규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가 설치된 직하층에는 피난상황 발생 시 피난사다리 전개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TV, 벽걸이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안전난간이 법적 기준에 의해 설치되므로 미관을 위해 안전난간대 미설치는 불가합니다.
 - 상층부 세대는 강풍시 난간대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가스쿡탑 주위에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 합니다.
 - 주방가구 상부 및 하부장에 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홀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우수용,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드레인 및 배관의 위치와 개수 등이 다릅니다.
 - 세대 욕실 천정에 점검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 배관은 거실,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며 가전제품 설치시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주방 등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공용배기 방식으로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며 세대 레인지후드에서 댄퍼까지만 연결됩니다.
 - 주방 배기는 공용배기 방식으로 동시 사용량에 따라 배기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공용 루프팬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배기장치는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홀이 설치됩니다.
 -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상부 등에 냉·난방 실외기가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용시 인근 등에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 발코니 또는 거실의 외부창호에 설치되며, 거실감시용 동작감지기는 전층 발코니 또는 거실에 1개소 설치됩니다. (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방법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 출입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스마트우편함은 통합형으로(무인택배시스템 포함) 각 동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다.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됩니다.
- 단지 내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내 후면에 설치, 세대분전반은 거실복도 경량벽체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조명기구, 스피커, 발코니동작감지기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일부 발코니에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며 사용시 주변 시설물과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등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5721, 5722동은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5721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5721, 5722, 5724, 5726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진동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레인지후드는 자동모드 설정 시 주변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운전 됩니다.
- 세대 설치되는 쿡탑과 가스차단밸브 및 배관사이 공간이 협소해서 대용량 냄비사용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빨래건조대는 리모컨에 의해 작동되며, 작동시 주변 설비배관 및 문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팜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함으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관련 사항

- 지구내 초·중·고 총 2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 시 지구 내 학교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해창초로 배치될 예정이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 통학구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설립이 확정된 중학교는 해창중(고덕8중)(2024. 9. 개교)이 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은 컴퓨터 전산 추첨방식으로 배정되며, 중학군(구) 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배정 일정 및 방법 등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개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계획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신설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 용지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사항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일(잔금 완납하여 열쇠를 수령하여 입주절차를 완료한 날) 이전에 이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리모델링 등 불법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공급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며, 팸플릿을 참고하여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지구(블록)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고덕 A-3	진흥기업(주) 외 2개사		(주)건축사사무소 광장 외 4개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고덕 A-7	한신공영(주) 외	-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고덕 A57-2	양우종합건설(주) 외 2개사	공사이행 보증서로대체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외 4개사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안내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주거약자 전체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급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신청단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기 입주단지 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조립식 욕실(BU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 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본 행복주택은 계약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도로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신한헤스티아 아트타워 2층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